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7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의자 : 김병주 · 황명선 · 최혁진

문정복 · 박지혜 · 전현희

이정문 · 송재봉 · 이재강

윤후덕 · 박정 · 김태년

소병훈 · 안호영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60년 대포 사거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것임. 그러나 당시의 기준은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와 맞지 않음. 예를 들어 북한의 122mm 방사포는 사거리 40km, 240mm는 60km, 300mm는 200km 이상으로 발전했으나, 현행 보호구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방부 역시 벨트형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단지나 신도시 조성 등 필요할 때마다 개별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제도의 비합리성을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설치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가 필요함. 이로 인해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겪고 있음.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

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되며,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와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어렵게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복합적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상황임.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 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 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 목 및 같은 조 제2항).

법률 제 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25킬로미터”를 “1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킬로미터”를 “5킬로미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